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7호 2017. 2. 17(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7-224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	1
○남원시 공고 제2017-229호 남원시 동남원 나들목 연결도로 설치공사 도로구역 결정(안) 공고 -----	3
○남원시 공고 제2017-244호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고 -----	13
○남원시 공고 제2017-271호 도로공고(변경) -----	2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7 - 224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17일

남 원 시 장

1. 사업명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 영농 도모, 소득증대
3. 사업비 : 1,547백만원 (1,083백만원, 232백만원, 232백만원)
4. 사업내용
 - 가. 위치 :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외 33지구
 - 나. 사업량 : 10.9km
 - 다. 사업내용 : 농로 포장 (콘크리트 포장)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5. 사업기간 : 2017. 02. ~ 2017. 12. 31.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

남원시

지구	경지정리시행		위치		사업량(km)	노선수
	시행 년도	면적 (ha)				
			읍·면·동	리	6.4	38
산덕	2011	26	운봉	산덕	0.9	4
주촌	1999	108	"	덕산	0.15	2
용산	1997	48	"	용산	0.15	1
권포	1996	114	"	권포	0.2	1
가산	1991	115	"	가산	0.25	1
바드리	2004	16	주천	용궁	0.25	2
신기	1994	92	송동	흑송	0.19	1
신촌	1989	92	"	두신	0.4	2
쑥계	1998	13	"	신평	0.19	1
송기	1997	80	"	장포	0.16	1
강석	1998	149	대강	사석	0.25	1
대신	2013	50	사매	대신	1.12	6
외항	1997	63	보절	성시	0.5	2
중신	1999	21	"	신과	0.22	3
의지	1997	70	아영	두락	0.24	1
부동	1998	32	"	일대	0.34	2
봉대	1996	92	"	봉대	0.08	1
산덕1	2011	26	"	의지	0.07	1
의지1	1997	70	"	두락	0.13	1
광석	2013	37	광치		0.61	4

한국농어촌 공사 남원지사

지구	경지정리시행		위치		사업량(km)	노선수
	시행 년도	면적 (ha)				
			읍면동	리	4.5	22
동천1	1995	80	운봉	동천	0.5	1
덕공	1994	96	운봉	공안	0.2	1
도촌	1992	181	보절	도룡	0.2	2
서치	1996	135	보절	서치	0.3	2
고정	1994	60	덕과	덕촌	0.1	1
방촌	1988	207	금지	상신	0.7	3
금풍	1995	323	주생	도산	0.4	2
동마	1992	75	주천	배덕	0.2	1
수송	2004	66	수지	산정	0.1	1
송내	2001	157	송동	송내	0.3	2
송상	2002	72	송동	송상	0.1	1
구상	1999	49	아영	구상	0.6	2
대강	2002	207	대강	방산	0.4	2
식정	2016	54	식정		0.4	1

남원시 공고 제2017-229호

공 고

남원시 동남원 나들목 연결도로 설치공사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남 원 시 장 인

1. 도로구역 결정(안)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25	부절~월석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일원	29,193	산동면 부절리 2285-534답	산동면 부절리 571-3도	-	0.994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5. 도로구역 결정(안)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게재생략”

6.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2. 17. ~ 2017. 3. 3.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2)

7.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안)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 편 입 용 지 조 서◀◀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변경)		관 계 인		용지도 번호
	최초	최종			당초	증감	변경 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2285-539	잡	463	463.0			최*주	****-1			
2		2285-534	답	905	905.0			최*주	*****-1			
3		2520	구	447.3	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2518	도	5,212.6	2,690.0			국	국토교통부			
5		2435-9	답	194.4	194.4			남원시				
6		2435-10	답	140.5	140.5			최*재 외1인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			
7		2435-11	답	1,006.4	1,006.4			남원시				
8		2435-12	답	1,085.7	1,085.7			남원시				
9		2435-13	답	322.4	322.4			남원시				
10		2435-14	답	777.5	775.5			남원시				
11		2435-15	답	781.2	781.2			남원시				
12		2435-16	답	776.2	776.2			국	기획재정부			
13		2517	구	655.6	1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2434-10	답	88.3	88.3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5		2434-11	답	214.2	214.2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6		2434-12	답	709.2	709.2			이*재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15			
17		2516	구	2,797.6	5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0-75	가		65.0			미등록지				
19		2081-2	답	123	123.0			공	남원시			
20		2080-6	답	553	553.0			공	남원시			
21		2080-5	답	684	684.0			공	남원시			
22		2078-6	답	248	248.0			국	국토교통부			
23		2076-2	임	178	178.0			공	남원시			
24		2078-2	답	17	17.0			국	국토교통부			
25		2077	답	255	255.0			공	남원시			
26		2075-1	답	344	344.0			공	남원시			
27		2074-3	답	986	986.0			공	남원시			
28		2069-2	답	743	743.0			공	남원시			
29		2071	답	259	259.0			공	남원시			

30		2070-2	답	300	300.0			공	남원시			
31		544-2	답	158	158.0			공	남원시			
32		545-2	답	82	82.0			공	남원시			
33		546-4	답	201	201.0			공	남원시			
34		550-2	답	95	95.0			공	남원시 외 1인			
35		2294-5	구	729	6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573-3	답	309	309.0			공	남원시			
37		573-1	답	215	215.0			공	남원시			
38		573-2	답	38	38.0			국	국토교통부			
39		575-1	답	134	134.0			공	남원시			
40		576-3	전	16	16.0			공	남원시			
41		576-6	전	14	14.0			국	국토교통부			
42		576-5	전	122	122.0			공	남원시			
43		577-4	전	3	3.0			국	국토교통부			
44		577-5	답	134	134.0			공	남원시			
45		577-3	전	138	138.0			공	남원시			
46		579-5	답	114	114.0			공	남원시			

47		580-8	답	239	239.0			공	남원시			
48		580-6	답	169	169.0			공	남원시			
49		581-6	답	70	70.0			공	남원시			
50		581-8	답	51	51.0			공	남원시			
51		581-4	답	75	75.0			공	남원시			
52		582-6	답	44	44.0			조*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 2층			
53		582-4	답	142	142.0			공	남원시			
54		656-7	답	45	45.0			박*순	***-1			
55		656-5	답	137	30.0			공	남원시			
56		656-2	도	76	42.0			최*현				
57		2065-2	도	43	43.0			공	남원시			
58		2065-8	답	111	111.0			공	남원시			
59		583-4	답	17	17.0			공	남원시			
60		583-2	도	20	20.0			공	남원시			
61		582-5	답	22	22.0			조*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 *층			
62		582-2	도	63	63.0			공	남원시			
63		581-2	도	26	26.0			공	남원시			

64		581-7	답	46	46.0			공	남원시			
65		581-5	도	57	57.0			공	남원시			
66		580-9	답	48	48.0			박*순	***			
67		580-5	답	6	6.0			공	남원시			
68		580-2	도	73	73.0			공	남원시			
69		579-4	답	2	2.0			공	남원시			
70		579-2	도	46	46.0			공	남원시			
71		578-6	답	100	100.0			공	남원시			
72		578-2	도	30	30.0			공	남원시			
73		578-3	도	47	47.0			공	남원시			
74		577-1	도	26	26.0			공	남원시			
75		578-4	답	1	1.0			공	남원시			
76		578-5	도	3	3.0			공	남원시			
77		576-1	전	10	10.0			국	국토교통부			
78		572-6	전	23	23.0			이*춘	***			
79		576-4	도	7	7.0			공	남원시			
80		576-2	도	26	26.0			김*백	목동리			

81		2328	도	518	103.0			국	국토교통부			
82		572-2	도	79	79.0			공	남원시			
83		572-3	답	22	22.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4		572-5	답	8	8.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5		572-4	도	3	3.0			김*	나고야시 외천백촌 7가 평침 ***			
86		571-2	도	44	44.0			최*직	***			
87		571-5	도	13	13.0			최*직	***			
88		2294-50	도	170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550-4	답	19	19.0			공	남원시			
90		550-5	답	14	14.0			국	국토교통부 외 1인			
91		2285-538	답	353	353.0			최*식	***			
92		2285-535	답	2,674	2,674.0			공	남원시			
93		2285-482	천	46,185	558.0			국	국토교통부			
94		2285-537	답	20	20.0			공	남원시			
95		2285-536	전	126	126.0			공	남원시			

96		2285-540	전	3	3.0			공	남원시			
97		0-73	가		30.0			미등록지				
98		2519	구	2,065.9	1,474.0			국	농림축산식품부			
99		2294-27	구	78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2294-28	구	637	2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2294-30	구	687	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2110-1	답	367	367.0			공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4			
103		2111-1	답	141	141.0			공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4			
104		2112	답	271	271.0			공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4			
105		2113-3	답	559	559.0			공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4			
106		2116-3	묘	81	81.0			최*동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07		2294-8	구	1,252	1,0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2080-4	답	6	6.0			국	국토교통부			
109		540-3	답	281	168.0			공	남원시			
110		540-2	도	38	38.0			공	남원시			
111		2336-1	도	90	8.0			국	국토교통부			
112		371-2	도	149	149.0			최*현	***			

113		371-5	답	72	55.0			공	남원시			
114		403-5	임	7	7.0			공	남원시			
115		372-2	도	7	7.0			장*식	***			
116		403-3	도	139	112.0			공	남원시			
117		373-1	답	78	72.0			공	남원시			
118		373-2	답	14	14.0			박*간	***			
119		372-4	답	38	38.0			박*순	***-1			
120		372-3	답	55	55.0			공	남원시			
121		371-4	답	469	469.0			공	남원시			
122		371-6	답	143	143.0			최*주	****-1			
123		540-4	답	8	8.0			공	남원시			
124		370-3	전	57	57.0			최*주	****-1			
125		370-1	전	34	34.0			공	남원시			
126		540-9	답	150	150.0			공	남원시			
합 계					29,193.0							

남원시 공고 제2017 - 244호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8조)

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 (안 제9조~안 제12조)

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 제13조~안 제14조)

라.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안 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안 제16조~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홍보전산과)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팩스(063-620-6703), 직접 방문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063-620-6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시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

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 또는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또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오류 또는 장난성의 내용이 게시된 경우

제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되어 시정참여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서비스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자료 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 처리·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붙임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해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국제협력·교류·관광유치 등을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16조(개인정보 보호) 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 2017 - 271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6-5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582-1	홍*두	2016-건축과- 신축신고-111	32	3	511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582, 583, 584, 585, 586, 587, 632, 636-4, 639-8, 639-10, 산67, 산68, 산68-1, 산78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582, 583, 584, 585, 586, 587, 632, 636-4, 639-8, 639-10, 산67, 산68-1, 산78	진출입로 지번 추가 및 도로지정 면적변경